

「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
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‘24. 7. 1.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변경사항 정비
- 상위법령 개정으로 불부합하거나 인용 자치법규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시민의 자치법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변경사항 정비 (안 제1장 : 안 제1조~제8조)
- 상위법령 불부합 정비 (안 제2장 : 안 제9조~제14조)
- 자치법규 인용사항 정비 (안 제3장 : 안 제15조~제49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,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, 「소프트

웨어 진흥법」, 「도서관법」, 「물환경보전법」, 「주택법 시행령」,
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

- 「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, 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, 「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2024. 7. 1.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변경사항 정비 및 상위법 불부합, 인용 자치법규 개정사항 미반영 조례를 일괄정비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 법령의 개정과 폐지,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등으로 변경된 행정 여건에 맞게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한 적절한 조례안임.
- 다만, 상위 법령 개정은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무부서에서 개정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, 조기에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.